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김보라	871229-*****	경상남도 통영시
정성원	770915-*****	전라남도 목포시
이판금	570909-*****	경기도 고양시
안상은	720219-*****	강원도 원주시
권준홍	801124-*****	경상북도 안동시
백서영	871123-*****	경기도 평택시
안혜진	830418-*****	경상남도 통영시
최옥자	550319-*****	충청남도 당진시
김재수	570216-*****	광주광역시 동구
최승용	8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진	861208-*****	경상남도 창원시
우미진	650305-*****	울산광역시 북구
강숙이	670321-*****	광주광역시 북구
나준호	841011-*****	경기도 수원시
오형기	650429-*****	전라남도 나주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보라	2019.1.24.~2019.6.27. 기간 중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의원 간호조무사)과 공모하여 ○○○○의원(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에서 화상진료(진단)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8.5.1.~2019.3.29. 기간 중 안○○ 등 3명이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에도, 안○○ 등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6.5.~2019.4.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보험(주)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정성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6.24.~2016.6.29. 기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병원(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7.15.~2016.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이관금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상해임에도, 2014.9.1.~2015.7.11. 기간 중 ‘슬관절 무릎 관절증’ 등의 사유로 ○○○○병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5.19.~2016.4.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안상은	2017.11.24.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15. 장○○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권준홍	2018.9.21. 부친 권○○을 치매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보험 가입 전 ‘치매’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부친 권○○의 중증치매 진단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2020.7.2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백서영	2019.4.30.~2019.7.9. 기간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노○○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30.~2019.8.2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해상보험(주)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안혜진	2019.3.29.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의원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의원(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에서 화상진료(진단)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9.~2019.4.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최옥자	2015.2.26.~ 2015.4.29. 기간 중 ㉠㉠㉠㉠의원(광명시 하안로 소재)에서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양제(일명 ‘카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기타합병성면역 결핍증, 폐경기및여성의갱년기상태’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5.7. 보험금을 청구하여 (주)㉠㉠㉠㉠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만원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김재수	2014.7.7.~ 2015.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광주 소재) 등에서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1. ~ 2015.4.21. 기간 중 1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승용	2014.9.4.~ 2016.2.28. 기간 중 유○○ 등 9명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 ~ 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장미진	2019.1.22.~ 2019.5.27. 기간 중 ㉠㉠㉠㉠㉠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본인 및 가족들이 마치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기간 중 3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우미진	2014.5.8.~ 2016.8.2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 2016.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강숙이	2014.11.18.~ 2014.12.3. 기간 중 김○○과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2.8. ~ 2014.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나준호	2017.3.27. 및 2017.8.21. 전○○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오형기	2016.3.31.~ 2016.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21. ~ 2016.4.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4.22.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 업무정지 제재는 신계약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4. 28.(금)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소은 변호사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soonse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